

#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

## (이경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-532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1. 18.

발의자 : 이경애 의원 등 2명

### 1. 제정이유

-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책무(안 제3조)
-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)
-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(안 제6조)
- 공사현장의 관리(안 제8조)
- 교통지도(안 제10조)

### 3. 제정 조례안 : 붙임

#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### 5. 예산수반사항 : 별첨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### 6.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### 7. 기타 참고사항 : 별첨(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)

#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어린이보호구역” 이란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(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.
2. “초등학교 등” 이란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“통학로”란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“어린이 보호구역”과 그 밖에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·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(이하 “보호구역”이라 한다)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 안산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** ① 시장은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해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계획
2. 보호구역의 현황
3.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·안전표지·CCTV에 관한 사항
4. 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·정비·유지에 관한 사항
5.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·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

6.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
  7.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
  8.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
  9. 그 밖에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-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실태조사)**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어린이 교통안전 교육)** 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1. 도로교통공단·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시장이 자체 제작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자료의 배포
  2. 「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서의 교통안전 교육
  3.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

**제7조(차량통제)** 시장은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력하여 보호구역에서 구간별·시간대별 차마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조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8조(공사현장의 관리)**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,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
  2.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·정비·유지에 관한 사항
  3.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
  4.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처리 계획
  5. 공사 전·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 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9조(협력체계의 구축)**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, 교육청, 교통안전 전문가,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0조(교통지도)**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·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,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예산지원)**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이경애의원 대표발의 (행정3569)

#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532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7일  
제 안 자 : 도시환경위원회

## □ 수정이유

- 조례 조문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수정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의 및 통학로의 정의에 인용된 도로교통법 “제 12조”를 명확히 “제12조제1항”으로 수정.(안 제2조제1항, 제3항)

## **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“제12조”를 “제12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12조”를 “법 제1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### □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원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어린이보호구역” 이란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12조</u> 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(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. 2. (생 략) 3. “통학로”란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<u>법 제12조</u> 에 따라 지정된 “어린이 보호구역”과 그 밖에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제12조 제1항</u> ----- ----- -----. 2. (원안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법 제12조 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.